

# 2023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선거관리실무지침서

2023. 9. 19.

## I 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본부지부	최 인 덕	선거관리위원장	울산
	김 시 연	선거관리 부위원장	창원병원
	이 미 연	선거관리 부위원장	안산병원 (1011333)
산하지부 중 2명	박 규 태	대구병원 선거관리위원	
	이 인 호	태백병원 선거관리위원	

※ 사무업무협조 : 김상규 조직실장

### 2. 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역할

- 후보자 접수 및 공고 등
- 선거인명부 관리
- 투표율 공지 및 개표관리
- 선거공보물 제작
- 입후보자 선거운동 문자 발송
- 산하지부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지원

### 3.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직무

#### ☐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항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본부지부선거관리위원은 본부지부선거관리위원과 산하지부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2017.11.23., 2023.3.9.)

- ① 본부지부 선거관리 위원장 1명
- ② 본부지부 선거관리 부위원장 2명
- ③ 각 산하지부 선거관리위원 중 2명(개정2013.4.15., 2017.11.23., 2023.3.9.)

**제9조(직무)** 선거관리위원장은 제반 선거사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개정2020.5.14)

-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인명부 작성
  2. 합동연설회 개최

3. 입후보자 등록 공고 및 등록 접수
4. 입후보자 자격심사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5. 투표, 개표의 관리(신설2020.5.14.)
6. 참관인 신청등록에 관한 사항(신설2020.5.14.)
7. 선거관련 각종 공고 및 홍보물에 관한 사항(신설2020.5.14.)
8. 당선자의 확정 및 통보(신설2020.5.14.)
9.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제반 유권해석(신설2020.5.14.)
10. 선거관리 실무지침 제·개정(신설2023.3.9.)
11. 기타 선거에 필요한 제반사항(신설2020.5.14., 개정2023.3.9.)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제9조의 2(의결정족수)(신설2023.3.9.)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입후보등록절차 공고)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전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각 지부 2곳 이상에 선거 공고 하여야 하며,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2013.4.15., 2023.3.9.)
- ② 본부지부장에 대한 선거공고는 선거일 30일 전, 지부장은 16일 전 에 하며,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에 한다.(개정2017.11.23., 2020.5.14.)
- ③ 입후보자 등록은 대리등록이 가능하다.(개정2017.11.23.)

## II

## 2023년 임원선거 일정표

#### 제19조(선거기간 및 입후보등록기간)

- ① 본부지부장(동반출마자 포함)의 선거일은 임기만료 년도 11월 네번째 목, 금을 선거일로 정한다.(개정2023.3.9.)
- ② 본부지부장(동반출마자 포함)의 입후보 등록기간은 선거 공고 5일 이후부터 5일간으로 한다.(개정2017.11.23., 2023.3.9.)
- ③ 제②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에 등록후보가 없을 시 3일 이내에 재공고를 한다. 재공고 시는 제①항과 제②항의 적용을 받는다.
- ④ 제③항에 의거해도 입후보자가 없을 시는 본부지부의 운영이 마비되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조합에서 직할 운영하며, 산하지부에 후보자가 없을 시에도 정상적인 운영이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본부지부에서 직할 운영한다.(개정2017.11.23.)

월/일	역순	주요일정	내용 및 합동연설회 일정
8/28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실무지침 논의
9/12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실무지침 확정
10/20(금)	D-34	본부지부장 선거공고 <b>【별표1】</b>	포스터형태
10/21(토)	D-33		
10/22(일)	D-32		
10/23(월)	D-31		
10/24(화)	D-30		
10/25(수)	D-29		
10/26(목)	D-28	본부지부장 입후보 등록 시작	지부별 선거인명부 작성 후 선거관리위원장에 보고
10/27(금)	D-27		
10/28(토)	D-26		
10/29(일)	D-25		
10/30(월)	D-24	본부지부장 입후보 등록 마감(13시)	- 기호 부여 및 입후보자 등록공고 준비 - 입후보자 간담회(선거관련 전달)
10/31(화)	D-23	선거운동 1일차	
11/01(수)	D-22	선거운동 2일차 산하지부장 선거공고 <b>【별표1-1】</b>	경기요양병원지부
11/02(목)	D-21	선거운동 3일차	선거인명부 열람 시작 안산병원지부
11/03(금)	D-20	선거운동 4일차	연구소지부
11/04(토)	D-19	선거운동 5일차	
11/05(일)	D-18	<b>휴일(일체의 선거운동 금지)</b>	
11/06(월)	D-17	선거운동 6일차 산하지부장 입후보 등록 시작	인천병원지부
11/07(화)	D-16	선거운동 7일차	서울의원
11/08(수)	D-15	선거운동 8일차	대전병원지부
11/09(목)	D-14	선거운동 9일차	정선병원지부
11/10(금)	D-13	선거운동 10일차 산하지부장 입후보 등록 마감(13시)	태백병원지부
11/11(토)	D-12	선거운동 11일차 산하지부장 선거운동 1일차	
11/12(일)	D-11	<b>휴일(일체의 선거운동 금지)</b>	

월/일	역순	주요일정	내용 및 합동연설회 일정
11/13(월)	D-10	선거운동 12일차 산하지부장 선거운동 2일차	동해병원지부
11/14(화)	D-9	선거운동 13일차 산하지부장 선거운동 3일차	광주의원
11/15(수)	D-8	선거운동 14일차 산하지부장 선거운동 4일차	순천병원지부
11/16(목)	D-7	선거운동 15일차 산하지부장 선거운동 5일차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제기 마감(15시) 창원병원지부
11/17(금)	D-6	선거운동 16일차 산하지부장 선거운동 6일차	부산의원
11/18(토)	D-5	선거운동 17일차 산하지부장 선거운동 7일차	
11/19(일)	D-4	<b>휴일(일체의 선거운동 금지)</b>	
11/20(월)	D-3	선거운동 18일차 산하지부장 선거운동 8일차	대구병원지부
11/21(화)	D-2	선거운동 19일차 산하지부장 선거운동 9일차	울산지부
11/22(수)	D-1	전체 선거운동 마지막일	
11/23(목)	투표1일차	모바일투표	
11/24(금)	투표2일차		당선자 확정 및 공고

### 1) 선거일

-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지부장 · 수석부지부장 · 사무국장 및  
산하지부 지부장 · 수석부지부장 선거일  
: 2023년 11월 23일 09시부터 24일 15시까지

### 2) 본부지부 운영규정 관련 조항

**제39조(선출)** 본부지부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개정2021.3.23.)  
 ① 본부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은 동반출마 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개정2017.11.23.)

### 3) 선거관리규칙 관련 조항

**제19조(선거기간 및 입후보등록기간)**  
 ① 본부지부장(동반출마자 포함)의 선거일은 임기만료 년도 11월 네번째 목, 금을 선거일로 정한다.(개정2023.3.9.)  
 ② 본부지부장(동반출마자 포함)의 입후보 등록기간은 선거 공고 5일 이후부터 5일간으로 한다.(개정 2017.11.23., 2023.3.9.)

- ③ 제②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에 등록후보가 없을 시 3일 이내에 재공고를 한다. 재공고 시는 제①항과 제②항의 적용을 받는다.
- ④ 제③항에 의거해도 입후보자가 없을 시는 본부지부의 운영이 마비되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조합에서 직할 운영하며, 산하지부에 후보자가 없을 시에도 정상적인 운영이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본부지부에서 직할 운영한다.(개정2017.11.23.)

◆ 선거관리위원회 해석 ◆

- 입후보 등록기간의 등록마지막일은 13시 까지로 한다.

##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임원 선거공고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임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부지부장, 본부수석부지부장, 본부사무국장 입후보자는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거일시 : 2023년 11월 23일 09시 부터  
2023년 11월 24일 15시 까지

※ 최고득표자가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 이상 득표를 못한 경우 상위득표자 2인 재투표 : 11월 29일 09시 ~ 11월 30일 12시(11월24일 15시~29일 09시 선거운동 금지)

2. 입후보자 등록기간 : 2023년 10월 26일 09시 부터  
2023년 10월 30일 13시 까지

※ 10월 30일(월) 13시 선관위의 유의사항 전달을 위한 입후보자 간담회 실시

3. 입후보자 등록 장소 : 본부지부 사무실

4. 투표방식 : 모바일 투표

5. 입후보자 구비서류

-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통
- 2) 추천서 1통

2023년 10월 20일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회

### Ⅲ 선거실무지침

## 1. 총칙

선거관리위원회가 2023년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선출하는 본부지부장(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및 산하지부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선거실무지침>으로 정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산하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위임할 수 있다.

## 2. 각칙

### 1) 선거권

**제12조(선거권)** 조합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에게 평등하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 ① 본부지부 운영규정 제11조 단서조항 해당자
- ② 본부지부 운영규정 제61조 해당자
- ③ 현재 조합원 중 선거일 4일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 ④ 신규조합원 중 조합비를 1회도 납부하지 않은 자
- ⑤ 해외연수로 인한 휴직자

**제11조(조합원 신분보장)**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파면, 해임 및 해고된 경우에도 지부 소속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7.11.23.)

- ① 퇴직, 사망 및 조합 활동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으로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 ②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
- ③ 조합이 정한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 되었을 때



**제61조(징계)**(개정2021.3.23.)

- ①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78조(징계) 및 조합 상벌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때는 산하지부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할 수 있다.(개정2014.4.30., 2023.3.9.) 단, 본부지부장(산하지부장)은 조합 중앙위원회, 본부지부(산하지부)임원은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개정2017.11.23.)
1. 조합의 선언·강령, 규약 및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비를 납부치 않았을 때(개정2017.11.23.)
  5. 조합비를 횡령 및 유용하였을 때
  6. 우리 노동조합과 가입대상이 중복되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을 때
- ② 재심은 조합 규약에 따른다.(신설2017.11.23.)
- ③ 제①항의 징계의 내용 및 절차는 조합 상벌규정 제8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7.11.23., 2020.5.14.)
- ④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제①항 6호 사유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제명으로 하며 산하지부총회(대의원회)에서 의결할 경우 징계가 결정되기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7.11.23.)
- ⑤ 징계대상자의 지위는 제①항의 각호의 당시로 한다(신설2020.5.14.)

2) 선거권 제한

**제13조(선거권제한)** 본 규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을 제한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해석 ◆

- 조합비를 내지 않은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선거권을 제한한다.
- 10월 25일자 기준 선거인명부 작성 이후 입사, 복직직원에 대한 선거권은 선거일 4일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하는 경우 선거권을 갖는다.

3) 투표장소

- 전자 투표로 진행 한다.

4) 선거인 명부 작성

**제14조(선거인명부작성)**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지부장(동반출마자 포함) 및 산하지부장(동반출마자 포함) 선거의 경우 동 규정 제12조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부별 선거인명부 【별표2 겹표지】 【별표2-1 겹표지】 【별표2 내용】 를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3.4.15., 2017.11.23. 2020.5.14., 2023.3.9.)

## 5)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제15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 ② 명부의 열람(【서식3】 【서식3-1】)은 선거 전일까지로 하며, 매일 09시부터 17시 까지로 한다.
- ③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선거시작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확정 선거인 명부를 이동식저장장치(암호설정)에 담아 후보자에 전달한다.(신설2023.3.9.)

### ◆ 선거관리위원회 해석 ◆

- 보건의료노조 2023년 6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제15조의 ④항 삭제 권고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④항은 적용하지 않으며, 그 대안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 문자 발송을 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한다.

## 6) 입후보자 등록

### 제20조(입후보자 등록)

- ① 본부지부장(동반출마자 포함)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 신청서【별표4】 【별표4-1】와 조합원 50인 이상(산하지부장은 조합원 15인 이상. 단, 100인 이하 산하지부는 10인 이상)의 서명(후보자간 중복서명 가능) 한 추천서【별표5】 【별표5-1】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한다.(개정2017.11.23., 2020.5.14., 2023.3.9.)
- ② 선거관리위원이 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 공고일 3일 이내에 사퇴서를 제출 하여야한다.(개정 2017.11.23., 2023.3.9.)
- ③ 조합원은 본부지부 임원으로 입후보할 경우 산하지부 임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없다.(개정 2017.11.23.)
- ④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추천서 1통이다.

제20조의 2(입후보자 결격 사유) 성희롱, 혐의로서 공단 및 의료지부(상급단체 포함)에서 경고 이상을 받은 조합원은 퇴직 시 까지 입후보를 할 수가 없다.(신설2023.3.9.)

### ◆ 선거관리위원회 해석 ◆

- 조합원 한명이 입후보자마다 중복추천 가능하다.
- 제20조의 2는 2023년 3월 9일 이후로 효력 발생한다.

## 7) 입후보자 자격상실

### 제22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 ①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축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 ② 동 규정 제27조(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개정2013.4.15., 2023.3.9.)
- ③ 위 제②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 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 ④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개정2023.3.9.)

## 8) 부정선거 등

### 제27조(금지사항)

- ① 선거운동기간 중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및 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흑색선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후보자 및 선거 종사자가 고의로 선거를 지연, 방해 하였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선거운동 중지 등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개정2013.4.15., 2023.3.9.)
- ③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병원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 ◆ 선거관리위원회 해석 ◆

- 부정선거 신고서 및 회신서 양식

## 부정선거 신고서

- 제보자(제보자의 신원은 제보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성명/사번		소속병원	
위반규정		연락처	

- 부정선거(선거위반) 신고대상자

기호	_____ 번	성명	
----	---------	----	--

- 부정선거(선거위반) 신고내용(6하 원칙에 의거 부정선거(선거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

〈신고의 취지〉	
위반일시	
장소	
위반내용을 상세히 구체적으로 기술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이외에는 공개하지 말 것

요청사항	
------	--

- 증빙자료 내역(별첨)

1	
2	

제보자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월      일

제보자 \_\_\_\_\_ (서명생략)  
입후보자 \_\_\_\_\_ (서명생략)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부정선거 신고 회신서

- 제보자(제보자의 신원은 제보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성명/사번		소속병원	
위반규정		연락처	

- 부정선거(선거위반) 신고대상자

기호	_____ 번	성명	
----	---------	----	--

- 회신내용

신고내용	
검토내용	
처리결과	

2023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장**

- 부정선거 신고절차
  - ⇒ 선거규정 및 실무지침을 위반한 부정선거를 발견하였을 경우 부정선거신고서에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장 사내메일로 제출
  - \* 제27조 금지사항에 해당되는 행위 발견 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메일로 제출
  - \* 금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 발견 시: 산하지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메일로 제출
- 신고서에 대한 회신절차
  - ⇒ 제27조 금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 확인 후 회신서를 통해 답변
  - ⇒ 금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단순한 사안: 산하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 확인 후 구두 답변
    - \* 복잡한 사안: 산하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 확인 후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후 회신서로 답변
  - ⇒ 신고서 접수 후 선거관리규칙 및 실무지침에 따라 본부지부 또는 산하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보건의료노조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상위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판례 등을 참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부정선거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메일을 통해 접수되는 경우만 인정하며 전화, 메신저 대화창, 문자, 카톡 등 SNS를 통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 산하지부에서 회신서로 답변 시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후 회신한다.
- 답변회신 소요일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는다.(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
-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발견 했을 경우 선거에 개입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선거관리위원의 직접 신고는 지양하고 해당사안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한다.
- 제재
  - 가. 1단계(주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규정, 실무지침위반 등 금지사항에 대한 부정선거신고서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위반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 시 해당 입후보자에게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일 이내 유인물을 통해 조합원에게 공식 사과하도록 주의를 준다.
  - 나. 2단계(경고): 해당 입후보자가 주의명령을 받은 이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즉시 구두로 경고를 주고 경고 받은 경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 다. 3단계(자격상실 및 당선무효):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다른 내용으로 부정선거신고서가 새로이 접수되어 사실 확인이 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다.
- 금지사항
  - ① 선거운동기간 전에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 가. 선거운동기구 또는 사조직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나. 각종 시설물, 인쇄물 기타용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후보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시설물, 표시물, 인쇄물 녹화물을 게시, 착용, 배부 상영하는 행위, 후보자의 명의로 안내장, 인사장, 축하카드 등을 발송하는 행위, 후보자의 경력, 구호 등이 기재된 명함을 수교하거나 통상적인 명함이라도 개별 방문 투입,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
    - 다. 방송,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에 후보자의 성명 등을 광고하는 행위
    - 라. 각종 집회 모임을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선거와 무관하더라도 모임에서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 마. 사내·외 메일(메신저)을 통한 선거출마를 알리는 행위
  - ②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는 선거인에게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및 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흑색선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가. 기부행위관련 위반사례 예시

-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병원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선거인에게 각종행사 및 모임에서 금품 또는 음식물 등 제공행위(금전, 화환, 달력, 서적, 기념품, 음식물 등)
- 선거부정감시, 투/개표참관인에 대한 보상 등을 명목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연설회, 대담, 토론회 참석자나 동원해 주는 자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나. 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흑색선전 예시

- 상대 입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근거 없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

③ 입후보자 및 선거 종사자가 고의로 선거를 지연, 방해 하였거나 본 규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④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하는 행위

가.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 선거인의 직속 상관 등에게 접근하여 특정 입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개입하는 경우

나.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정식으로 신고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 대화창 등을 통해 선관위원회에 선거위반사태를 직접 신고하는 등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 근거자료(사진, 동영상, 녹취록 등)를 첨부하지 않은 채 미확인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신고하여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속적인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여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 9) 입후보자 등록공고

### 제21조(입후보자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등록을 마친 자 중 후보등록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 마감일후에 각 후보별로 소개하는 공고문【별표7】【별표7-1】을 각 산하지부 2곳 이상에 각 후보 순으로 가로서열 게시하여야 하며, 후보등록 공고문 부착 전에는 후보자의 홍보 전단지 부착하여서는 안된다.(개정2020.5.14., 2023.3.9.)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성별, 조합경력 등을 공고문에 게재하며 입후보자는 공고문에 게재할 사항 등을 등록 마감 시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7.11.23., 2023.3.9.)

③ 후보자에 대한 기호 부여는 후보등록 순으로 추첨 우선권을 부여한 후 추첨을 통해 순위를 매겨 1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한다.(개정2023.3.9.)

### ◆ 선거관리위원회 해석 ◆

- 공고문을 【별표7】【별표7-1】에 준하는 벽보형식으로 제작하며,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사진·성명·직렬 및 직급·연령·노동조합 경력·공약사항을 기재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공보물은 공통양식으로 제작한다.

- 선거벽보 : 길이 76cm, 너비 52cm(단면 1장) 지부별 최대 3곳 이내 게시(지부별 5장 발송)
-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등록 공고문 부착 전 입후보자의 현수막 설치는 가능하다.

## 10) 입후보자 사퇴신고

###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장 선거 후보 사퇴서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장(본부수석부지부장, 본부사무국장)선거에 입후보하였던 후보자 ○○○-○○○-○○○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보자를 사퇴합니다.

후보자	본부지부장 후보 :	(인)
	본부수석부지부장 후보 :	(인)
	본부사무국장 후보 :	(인)

사퇴사유 :

사퇴일시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 선거관리위원회 해석 ◆

- 입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체 없이’ 라는 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사안이 발생된 즉시로 해석하여야 한다.

## 11) 선거운동

### 제23조(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에 대하여 동등한 근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부지부는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개정2013.4.15., 2017.11.23., 2023.3.9.)
- ② 제①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2017.11.23.)
- ③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포함한 선거인들도 사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7.11.23.)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과 협의를 통하여 각종 홍보수단의 범위 및 방법을 정한다.(개정 2017.11.23.)

제23조의 2(후원금 모금) 선거에 입후보한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계좌를 통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신설2023.3.9.)



제23조의 3(선거비용의 공영제) 직접 선출하는 임원의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본부지부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며, 선거 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신설2023.3.9.)

제23조의 4(선거비용)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한다.(신설2023.3.9.)

1. 출장비
2. 선거관리위원회 공보물 제작
3. 후보자 홍보물 제작

제26조(입후보자 방문선거 운동)

- ① 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2023.3.9.)
- ② 후보자가 산하지부 방문시에는 해당 지부에서 후보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반드시 제공 하여야 한다.(개정2017.11.23., 2023.3.9.)

◆ 선거관리위원회 해석 ◆

- 후보자의 기호확정으로 인한 인쇄물 출력이 늦어져서 선거운동 시작은 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한다.
- 선거운동 기간 중 일요일은 어떠한 형태의 선거운동(방문, 전화 등)을 하여서는 안되며, 선거운동 기간에서 제외한다. 선거운동을 한 신고접수 시 확인 후 부정선거로 인정될 시에는 제재 2단계인 경고를 준다.
- 기 지급한 출장비를 전액 환수하는 경우 : 중도사퇴 및 자격상실(사망제외, 일할계산), 입후보 단일화
- 제23조의 4(선거비용)에 입후보자를 대신하여 발송하는 문자 비용은 “후보자 홍보물 제작”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보건의료노조 2023년 6차 중앙집행위원회의에서 제23조의 2 삭제 권고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모든 조합원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
- 현지부장 및 지부장 출마자도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

12) 홍보물

제24조(홍보물)

- ①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는 개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홍보물은 후보당 3회 이하로 제작하여야 한다.(개정2020.5.14., 2023.3.9.)
- ② 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허위사실 내용과 비방한 홍보물에 대해 배포 금지를 통보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개정2023.3.9.)

◆ 선거관리위원회 해석 ◆

- 인쇄비는 선거운동 종료 후 12월 첫째주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결제(승인)내역 출력(출력일자 포함) 또는 카드사에서 발급(발급일자 포함)받은 “이용내역확인서” 제출
- 인쇄비는 예산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균등 배분하며, 단 입후보자별 한도(500만원)를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출금액만 지급한다.  
예시) A후보 지출액 700만원, B후보 지출액 300만원 일 경우  
⇒ A후보 500만원, B후보 300만원 지급
- 공식홍보물의 후보자들 직함은 “본부지부장, 본부수석부지부장, 본부사무국장” 을 사용해야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제작 공보물 규격(선거벽보) : 길이 76cm, 너비 52cm(단면 1장)
- 입후보자들은 아래의 공식홍보물 해당되는 홍보물 제작 시 허위사실이나 비방의 내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안을 제출하여야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심의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 입후보자들은 아래의 공식홍보물 제작 시 현재 산하지부장과 출마가 예상되는 산하지부장과 함께 한 사진 등을 공식홍보물에 게재 할 수 없다.
-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는 공식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으며, 아래의 3가지 중 **입후보자** 1인당 2가지 이내에서 홍보물 제작가능
  - ① 책자형 선거공보(A4용지 규격): 전체의 100분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사진, 성명, 기호, 경력, 정책, 공약, 추진계획) 등을 게재하되, 다른 입후보자에 대한 사항을 게재 금지하며 전체 면수가 8면을 넘지 않는다.
  - ② 현수막(천으로 제작하되 10제곱미터 이내) - 지부마다 1곳 게시  
부착금지 방법 :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 다른 입후보자의 현수막을 가리는 방법, 투표소가 설치되는 장소에 게시하는 것, 병원 밖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하는 것
  - ③ 선거홍보동영상(3분 이내)
- ①, ②의 홍보물은 각 산하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을 수 있으며, ②는 산하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산하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 및 부착한다.
- ②의 현수막 부착 위치는 산하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순위, 2순위를 지정하여 사전에 사진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①의 홍보물은 산하지부 선거관리위원 및 입후보자의 지지자가 배포 할 수 있다.
- 선거종료 후 현수막과 벽보의 수거 및 폐기는 산하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제작하여 배부 할 수 있는 홍보수단
  - 홍보명함(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외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길이 9cm 너비 5cm 뒷면에 게재내용은 100자 이내로 할 것
  - 어깨띠(길이 240cm, 너비 20cm), 윗옷, 마스크트, 표찰(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 정책 및 공약을 포함한 홍보내용의 문자 또는 카톡으로만 기호당 1일 1회, 총8회에 한해 보낼 수 있다.(입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 : 공직선거법
  - 내용, 수신자 대상 인원 구분없이 입후보자가 전송하면 1회로 본다.
  - 입후보자가 발송 할 문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하며, 위의 총 8회 중 ( )회
  - 문자는 본부지부 선관위 사무국에서 보낸다.
- ◇ 문자 포맷
  - 문자 발송시간 : 평일 오후 3시 ~ 5시 사이에서 입후보자가 선택
  - 입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장에 보낸 문자내용을 조합원에 발송전 본부지부장 입후보자에게

먼저 보낸 후 이상유무 확인을 받은 후 조합원에 발송

- 제목 : 근복의료 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회

- 입후보자의 명함은 입후보자 및 각 지부의 지지자들이 배포 할 수 있다.
- 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비방내용을 게재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허위사실내용과 비방한 홍보물에 대해 배포금지를 통보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13) 합동연설회

<p><b>제25조(합동연설회)</b></p> <p>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부별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각 후보당 정견발표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개정 2013.4.15., 2017.11.23., 2023.3.9.)</p> <p>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 일시, 장소, 연설택간을 지부별로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13.4.15., 2023.3.9.)</p> <p>③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택순서는 연설택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p> <p>④ 후보자는 합동연설회 개최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조연설택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찬조연설택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택이 끝난 뒤 실시하며 순서는 당해 후보의 연설택순서에 따른다. 찬조연설택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p> <p>⑤ 후보자가 찬조연설택원을 두는 경우 합동연설회 시작 30분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23.3.9.)</p> <p>⑥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또는 찬조연설택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택을 중지시켜야 한다.(개정2013.4.15., 2023.3.9.)</p>
---

◆ 선거관리위원회 해석 ◆

- 찬조연설택자의 연설택시간은 2분 이내로 한다.

### 14) 개인연설회

<p><b>제25조의 2(개인연설회 제한)</b>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신설2023.3.9.)</p>
---

### 15) 투표방법

◆ 선거관리위원회 해석 ◆

- 전자투표로 실시한다.
- 선거기간 내 052-704-7552 로 발송되는 문자를 통해서 절차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한다.
- 전자투표로 진행하므로 투표소, 투표용지, 투표함, 참관인, 투표록 등이 필요하진 않는다.

### 16) 투표시간

- 투표기간(11월 23일 09시부터 24일 15시 까지)내 개인별로 투표를 진행한다.
- 전자투표업체 선정 : 우리리서치

## 17) 투표용지

-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에게 대해 최소한 투표개시일 5일전까지 전자투표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8) 개표

- 전자투표업체에서 투표결과를 본부지부 선관위 사무국 담당자 앞으로 메일 발송
- 전자투표업체에서 지부별 투표결과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부별 투표결과는 원하는 입후보자에게만 공개한다.(후보자 간담회 때 방법 결정)
- 전 조합원에 투표결과를 공지 할 때에는 지부의 합산 투표결과만을 공지

## 19) 당선자 결정

### 제34조(당선자)

- ① 본부지부장 선출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독 후보일 경우에도 이 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개정2013.4.15., 2023.00.)
- ② 본부지부장 후보가 2인 이상 출마한 경우 최고득표자가 과반수이상 득표를 못한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이 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한다.(개정2017.11.23., 2023.00.)
- ③ 당선인이 결정됐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당선인(동반출마자 포함)에게 “당선필증” 【별표12】 【별표12-1】 을 교부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개정2017.11.23., 2023.3.9.)

제35조(당선자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이 확정된 대표자(임원)를 즉시 공고 【별표11】 【별표11-1】 한다.(개정2023.3.9.)

## 20) 재선거

### 제36조(재선거)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39조 2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우
  4. 제34조(당선자)에 의해 당선자가 없을 경우(신설2020.5.14.)
- ② 위 제①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개정2013.4.15., 2023.3.9.)

### 제3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 ① 본부지부장(동반출마자 포함) 선거의 경우 일부 산하지부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 무효 결정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산하지부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 처리한다.(개정2013.4.15., 2017.11.23., 2023.3.9.)

② 위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 21) 선거의 연기

### ◆ 선거관리위원회 해석 ◆

- 천재지변, 홍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를 제외하고는 선거를 연기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선거를 연기할 경우 선거연기의 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별도양식에 의한다.

## 22) 선거관리규정 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 건

### 제18조(선거관리규정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권)

- ①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우선하며,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무시한 산하지부 선거관리위원회 및 당사자의 행위는 무효이다.(개정2013.4.15., 2017.11.23, 2023.3.9.)
- ② 제①항을 적용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이 중지된 상태인 경우에는 본부지부 운영위원회가 해석권을 갖는다.(개정2013.4.15., 2023.3.9.)

### ◆ 선거관리위원회 해석 ◆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해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때 공직선거법, 선거위반사례 판례 및 보건의료노조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응답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